

#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자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휴가 부여기준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사량 시스템에 사용될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보육휴가 부여기준 개정(안 제11조제6항)
  - 자녀 기준 : 2세 미만 → 영유아
  - 매년 권장연가일수 소진 시 보육휴가 사용 가능
- 공무원증 신설(안 제12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    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휴가 부여기준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에 사용될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보육휴가 부여기준의 확대로 일과 가정 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